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

검 토 보 고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명확화 및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13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8. 18.
3. 회 부 일 : 2025. 0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최근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의 개입하는 등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주가 이를 강요하는 정황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와 청원경찰에게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

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이러한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청원경찰의 의무등을 신설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1조 및 제12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3조의2제1항), 청원주가 청원경찰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3조의2제2항), 청원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안 제11조제1호), 배치승인 위반 등 및 최저보수 미지급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안 제12조제1항)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청원경찰의 의무 등) ①</u> <u>청원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u>

현행	개정안
제11조(벌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과태료) <신 설>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 1.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청원주 2.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 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

현행	개정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u> 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u> ② ----- ----- -----. <삭 제>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u>----- ----- -----.

2. 검토 내용

첫째, 청원경찰의 경비업무 범위 일탈 금지(안 제3조의2제1항)

개정안은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함.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직무를 “경비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행위 준칙이나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청원경찰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청원경찰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현행 「청원경찰법」 제10조제1항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려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정당한 사유”, “위력의 과시”, “물리력의 행사”,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청원주의 강요행위 금지 및 처벌(안 제3조의2제2항, 안 제11조제1호)

개정안은 청원주가 청원경찰로 하여금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청원주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청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원경찰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막고, 청원경찰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한 청원주를 처벌하여 제도의 입법취지 및 경비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의 고용관계 특성상 청원주의 정당한 업무지시와 위법한 강요행위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며, 특히 비상상황에서의 지시행위가 위법한 강요행위로 오인될 가능성도 존재함.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원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안 제11조제1호)은 두고 있으나, 청원경찰이 안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현행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¹⁾ 및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만으로는 제재가 불명확하므로,

1)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위반행위를 제5조의2 징계사유로 명시하거나 별도 제재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12조)

개정안은 청원경찰 배치결정·임용 위반 및 최저보수 미지급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4배 상향 조정함.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임용과 보수 지급에 있어 법적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상향하는 것은 인상 폭이 상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실효성, 위반행위의 경중, 경비업 등 관련 법령상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타 법률의 과태료 수준과 비교해 보면, 「경비업법」의 경우 감독상 필요한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 위반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의 배치결정·임용승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2,000만원)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 불이행 등 경비업법상 일반적인 위반행위(500만원)보다는 높지만 배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3,000만원)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배치허가 위반 등 관련 청원경찰법·경비업법 과태료 비교>

구 분	과태료 수준	주요 내용
청원경찰법(현행)	500만원 이하	·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임용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임용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자
청원경찰법(개정안)	2,000만원 이하	(현행 유지)
경비업법(제31조)	3,000만원 이하	·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

경찰청은 청원경찰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금지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3조의2제1항이 현행 「청원경찰법」 제10조제1항과 유사하여 중복입법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태료 관련해서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등에 있어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보수 지급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44